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8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사업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 1) 용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추 천 :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대 출 : 공단이 용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용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4) 대 여 :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용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5) 대출승인 :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소요자금 : 용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 7)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8) 공공기관 :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 9)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 11)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12) 시설의 개체 :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폐기하는 기존 시설의 대체에 한한다.
- 13)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 14) 목적외의 사용 :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5) ESCO펀드 :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ESCO투자사업에 대하여 용자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4. 자금지원 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

가. 자금지원범위

- 1)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ESCO 투자사업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한다.
- 2) ESCO펀드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국내외 ESCO투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출이자율,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이외에는 동 지침의 ESCO투자사업의 자금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다만, 공단은 대출이자율, 지원한도, 대출수수료, 세부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지한다.
- 3)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나. 자금지원조건

사 업 명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비 고 (억원)
ESCO투자사업		500억원 이내 (동일투자사업장당 2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3,900
절약시설 설치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 운 영요령」에 따름	1,096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1,022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5억원 이내			
합 계					6,018

-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 주2)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주3) 전년도에 자금추천을 받은 계속사업 중에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이 위 표의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약시설설치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5배를 적용한다.

다. 자금지원대상자

사업명	자금지원대상자
I. ESCO투자사업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및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
II.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다만, 2012년까지 목표 관리제 대상기업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도 가능) - 단, 그린크레딧(Green Credit)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이 자금신청하는 경우 포함
III.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산업체 등 절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아닌 자
IV.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V. 수요관리투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ESCO투자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함)

라. 자금지원대상사업

사업명	대상사업
I. ESCO투자사업	○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I항에 해당하는 시설
II.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관리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의 개체사업 - 단,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증설 사업도 포함
III.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III항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개체에 해당되는 사업 - 단,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증설 사업도 포함
IV. 고효율제품 등 생산 시설설치사업	○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IV항에 해당하는 시설
V. 수요관리투자사업	○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V항에 해당하는 시설

5. 자금추천

가.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자금신청금액은 최소 신청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 2)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일 경우는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별지서식 1호)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인증서 등] 을 첨부하여 추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나.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ESCO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따사론 아파트사업’(영세노후아파트 ESCO시범사업) 및 IT기반 신규 ESCO사업 발굴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등 에너지절감효과가 산출되지 않는 사업, 자금추천대상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한다.

다. 공단은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등 에너지절감효과가 산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공단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의 60%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ESCO투자사업 예산 중 3,000억원은 중소기업 및 건물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분야 추천금액이 상반기에 당해 예산의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의 미집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7월이후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바. ESCO투자사업의 중소기업 및 건물에 대한 지원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인 ESCO투자사업, 건물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건물부문의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성과보증방식의 ESCO투자사업(단, ESCO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ESCO투자사업의 형태로 변경된 사업 포함)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아.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자.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차.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카. 기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하며,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업체,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공단은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타.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최초 자금인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해연도 소요자금으로 대출승인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마.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 공단은 자금추천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진척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아.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자. 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한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차.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7.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공단에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나.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다만, 공단은 최초인출금액을 추천금액의 20%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 다.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 라.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마. 공단은 “나”항 내지 “라”항에 규정한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 자금지원 제외는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사후관리

- 가. 금융기관(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 2.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 4. ESCO가 “마”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 나. 금융기관은 “가”항의 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생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한 금액의 규모가 추천 금액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공단은 “가”항의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 라.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동 지침에 위반하는 사항의 발생에 관련된 경우에는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ESCO투자사업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성과배분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다음 분기 정기 상환일까지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 바.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추천심사를 잠정 보류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사업성과 점검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아.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기 타

- 가.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식경제부 및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공단은 자금추천심사 등 자금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 산하에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 자체성과평가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 다.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 라.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매년 5월, 10월경에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동 지침 개정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마.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자금지원에 대한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특정설비 또는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자금추천한 사업은 동 지침에 따른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대상시설 관련사항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금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ESCO투자사업은 2011년 3월 15일까지 자금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추천시 동 지침 5. 나. 1) 항에 열거된 사업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I. ESCO투자사업		
	<p>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가 실시하는 ESCO 투자사업</p> <p>다만, ESCO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7항에 따른 에너지진단기관이 진단한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 또는 온실가스감축효과가 5%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진단 완료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에 한하며, 아래의 각호 설비는 지원에서 제외함</p> <p>㉠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방기, 난방기 또는 냉·난방기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는 지원 가능)</p> <p>㉡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절감효과를 입증하는 시험 성적서가 없는 전기절전기</p> <p>㉢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 기술을 이용한 설비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이라고 인증받지 못한 설비</p>	<p>-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방식, 신성과 배분방식 또는 성과보증방식으로 계약이 성립된 사업으로서 에너지절약설비·신재생에너지시설·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설비(진단비용, 에너지절약측정 및 평가비용 포함)</p> <p>다만, 설치하고자하는 설비가 [별표1]의 III항, V항에 해당되는 설비일 경우에는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에 한함</p> <p>-신재생에너지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설비로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p> <p>다만, 폐기물에너지설비인 경우는 상업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함</p> <p>-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설비에 한함</p> <p>-노후 건축물의 단열개수사업은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p> <p>-성과보증계약인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기관이 진단한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일반설비와 비교하여 5%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공정 등을 신설 또는</p>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p>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진단 완료후 5년이내 실시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함</p> <p>-ESCO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따사론 아파트 사업’(영세노후아파트 ESCO시범 사업) 및 IT기반 신규 ESCO사업 발굴사업</p>
II.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p>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관리업체의 에너지 절약 사업</p> <p>③ 그린크레딧(Green Credit) 사업</p>	<p>--2012년 까지 목표관리 대상업체로 지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도 가능 (최근 3년 통계기준)</p> <p>-단, 설치하고자하는 설비가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III항에 해당하는 설비일 경우는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에 한함</p> <p>-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측장비 및 소프트웨어 (신·증설 포함)</p> <p>-발전사업자의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II, III항 적용)</p> <p>-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입안 중)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신·증설 포함)</p>
III.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1. 사업부분	④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및 운영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신·증설 포함)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p>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가 5%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p> <p>⑥ 산업채건물 열병합발전시설을 산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사업</p> <p>⑦ 기술개발 실용화 사업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 기술을 이용한 설비로서 공인 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비교시험(측정)한 결과 단위설비당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이라고 인정하며,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설치 및 생산시설</p> <p>⑧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보완을 요청 받거나 권고받은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는 설비</p>	<p>-진단받은 시설, 공정의 개체, 개선을 위한 투자비와 진단비용을 포함</p> <p>-대·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함</p> <p>-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산증설은 제외</p> <p>-국산 기술개발의 경우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거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 신청을 한 것에 한하며 특허출원 공고일(실용신안 출원공고일)로 부터 3년간(또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 신청일부터 4년간) 지원 가능함</p> <p>-외국에서 도입되는 기술의 경우 도입계약에 의한 것에 한하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부터 2년간 지원 가능함</p> <p>-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원기간 이내 지원 가능함</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완료한 사업 또는 시설로 [별표 1]의 III항, V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p>
2. 시설부분	⑨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를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보일러로 개체	-개체 가능 용량범위 내에서 2대 이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개체전 노후보일러는 폐기하여야 함
		-단순 버너교체, 전기보일러·주택용 보일러 개체사업은 제외 (단, 공동주택의 경우 ESCO투자사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⑩ 보일러 급수처리장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공단에서 인증받은 품목에 한함
	⑪ 폐열회수 열교환장치	-폐열회수를 위한 열교환기에 한함
	⑫ 폐열회수형 버너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⑬ 폐열이용 보일러	
	⑭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 장치	-발전사업용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 취득자에 한함.
	⑮ 공정 폐가스 이용장치	-가연성 배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 및 보유열 이용장치가 동시에 설치되는 것
	⑯ 잉여열이나 공정 발생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와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된 잉여열이나 공정발생열에 한함
	⑰ 축열식 연소장치 이용시스템	-가연성 기체연소장치로서 축열재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것
	⑱ 촉매 연소장치 이용 시스템	-촉매를 이용한 가연성 기체 연소장치로서 고온의 열을 회수 이용하는 것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p>①9 폐열회수형 히트펌프</p> <p>②0 응축수회수시스템(Drainage System)</p> <p>②1 삼과장 무전극 램프시스템</p> <p>②2 보안등용 안정기내장형 램프</p> <p>②3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시스템</p> <p>②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p>	<p>-공기열원 및 지열원은 제외함.</p> <p>-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대상 기기인 경우 검사를 필한 제품에 한함</p> <p>-차압 및 압력조절시스템이 부착된 것으로 응축수를 자동배출 시키는 장치</p> <p>-유도코일을 적용한 무전극시스템</p> <p>-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70W이상인 보안등용 안정기내장형 램프로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역률 0.9이상, 광효율 65 lm/W이상, 실용성 가속평가 15천회 이상인 램프(다만, 시험방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중 '안정기내장형 램프'의 경우에 준함)</p> <p>-용량 150W 이상인 램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며, 150W 미만인 램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득한 것으로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시험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술기준 중 '메탈할라이드램프'의 경우에 준함) 광효율 85 lm/W 이상인 것에 한함. (단, 안정기와 반사각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p> <p>-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다만, LED조명의 경우에 신·증설 포함)</p>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㉕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 장치(VVVF) ㉖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 ㉗ 압축기 ㉘ 고온 응축수 펌프 ㉙ 고속 터보블로워 ㉚ 에너지절약형 유리 용해로 ㉛ 직접 통전식 유리용해로 ㉜ 롤러허스(RollerHearth)킬른 ㉝ 하부연소식(UnderFiring)킬른 ㉞ 벨 킬른 ㉟ 배가스 폐열회수형 세라믹제 도금용해로	-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콘트롤 장치 포함 -인버터 제어 스크류 타입의 공기 및 가스압축기에 한함 -임펠러가 개방형 구조 등으로 케비테이션 현상이 최소화되고, 고온 급수(100℃이상)가 가능한 것 -고속(1만rpm이상) 전동기 직결형 터보블로워 -Separated Refiner, Submarine(또는 Deep) Throat 및 가열면적이 15.5 m ² /m ³ 이상의 축열기 또는 환열기 등을 겸비한 것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연속식 터널킬른으로 피소성물 하부와 대차 상부면 사이에 확보된 연소공간을 갖는 구조인 것(다만, 폐열이용시스템을 갖춘 것) -에너지관리 기준상의 표준 폐열 회수율 이상의 것(다만, 정격용량이 100만kcal/h미만인 경우는 폐열 회수율 20%이상인 것)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p>③⑥ 배가스 폐열회수형 금속 용해로</p> <p>③⑦ 전기 유도용해로</p> <p>③⑧ 고온 도가니 전기로</p> <p>③⑨ 배가스 폐열회수형 롤러 허스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다만, 주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함)</p> <p>④⑩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다만, 주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함)</p> <p>④⑪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p> <p>④⑫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p> <p>④⑬ 유도상 열처리로</p> <p>④⑭ 원적외선 열처리로</p>	<p>-에너지관리 기준상의 표준 폐열 회수율 이상의 것(다만, 정격용량이 100만kcal/h미만인 경우는 폐열 회수율 20%이상인 것)</p> <p>-주파수 150Hz이상인 것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개체에 한함)</p> <p>-단열내화벽이 300mm 이상인 것</p> <p>-에너지관리 기준상의 표준 폐열 회수율 이상인 것(다만, 정격용량이 100만kcal/h미만인 경우는 폐열 회수율 20%이상인 것)</p> <p>-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에너지관리기준상의 표준 폐열 회수율 이상의 것(다만, 배가스의 50%이상을 재순환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정격용량이 100 만kcal/h미만인 경우는 폐열 회수율 20%이상인 것에 한함)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로내압 제어장치를 갖춘 것 (다만, 연속장입·출구가 개방된 구조의 것은 제외함)</p> <p>-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개체에 한함</p> <p>-원적외선 열원을 이용하고 자동제어 시스템이 부착된 것</p>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④5 전기 침적식 보온로	-무산화 가열 방식인 것
	④6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수세온도가 자동조절 되는 것
	④7 정련, 표백의 2공정 전처리 과정을 한 공정으로 단축 처리한 것	-정련, 표백을 연속처리하는 구조로 정련, 표백공정 사이에 수세조가 없는 것
	④8 저욕비 염색기	-욕비가 1:5이하로 염색하는 로토 웨이크형 또는 바스켓형 설비에 한함
	④9 고효율 사 염색기	-욕비가 1:6이하인 것
	⑤0 자동 사염 건조기	-2개 이상의 블로우어 및 세퍼레이터에 의하여 건조시키는 장치
	⑤1 에너지절약형 히트셋팅기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⑤2 무장력 연속 스티머	
	⑤3 충격유하식 증발농축장치	
	⑤4 증기 재이용 진공 증발관	-3중 효율관 이상인 것
	⑤5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
	⑤6 원적외선 건조기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생성된 복사 에너지로 건조되는 시스템
	⑤7 냉풍 건조기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것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⑤8 에너지절약형 도장부스	-LNG, LPG를 열원으로 한 직접 가열식인 것
	⑤9 마이크로파 건조가열장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⑥0 전해장치	-이온교환막법에 한함
	⑥1 패킹타워를 이용한 증류탑	-판형 분리탑을 충전물에 의한 분리탑으로 내부를 개조한 것
	⑥2 주정 연속발효, 증류정제시설	-발효 Mash를 증자, 당화 및 발효의 각 공정에 연속적으로 보내어 증기 가열, 살균횟수를 대폭 줄인 시스템 (다만, 기존 회분식을 연속화한 것에 한함) -탑간 폐열을 상호 이용하는 다중 효율 증류설비(다만, 가압, 상압, 감압의 다중 압력형에 한함)
	⑥3 고농도 펄퍼	-지료 농도를 10%이상으로 해리시킬 수 있으며, 농도의 자동 조절이 가능한 펄퍼
	⑥4 장·단섬유 분리장치	-장·단섬유를 분리하여 장섬유만 선택적으로 고해하므로써 고해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치
	⑥5 고압 탈수장치	-선압 350kg/cm 이상인 것으로 압력 및 유인장치 등 포함
	⑥6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완전밀폐로 배열회수장치가 포함 된 것으로 노점온도가 58℃이상으로 설계된 것
	⑥7 아큐뮬레이터	-부하변동 안정화를 위한 축열 장치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⑥8 압축공기 제습장치	<p>-제습제를 자체 압축용 공기로 재생하고, 제습용 압축공기는 외부에 방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장치</p> <p>-복합형 압축공기제습장치로서 냉동식 제습장치와 흡착식 제습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한 설비</p> <p>-PPR(Pulse Purge Regeneration) 시스템으로서 퍼지를 다단계어로 하는 경우에 한함</p> <p>-Dew Point Meter를 이용하여 제습기 후단의 노점을 측정, 유입 수분 부하량에 따른 건조 및 재생 시간을 조절하는 시스템</p>
	⑥9 산소부화 시스템	-Membrane(막)방식인 것
	⑦0 증기 재압축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로 열 압축기, 기계식 압축기, 증기재압축식 증발관에 한함
	⑦1 응축기튜브 자동세척장치	<p>-불순환방식의 냉동기용 응축기튜브 자동세척장치</p> <p>-Diverter Valve를 이용하여 브러시 왕복운동에 의한 냉동기 세척용인 것</p>
	⑦2 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펌프, 송풍기, 압축기 등을 구동하기 위한 것
	⑦3 온실용 자동권취 다겹보온 시스템	-온실내부 설치용 보온시스템으로서 자동권취 및 다겹(5겹이상) 보온재를 구비한 시스템에 한함
	⑦4 보온공기팩이용 온실난방 시스템	-온풍을 투입한 공기팩을 측면 또는 천정에 보온재로 사용하는 시스템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⑦⑤ 보온터널이용 온실난방시스템	-온실내부에 보온터널을 설치하여 난방공간을 축소하고 자동개폐하는 시스템
	⑦⑥ 건물자동화 제어장치(건물 에너지 절약관련 자동운전 제어장치)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제어가 가능한 시스템(다만, 에너지절약과 관련없는 제어장치는 제외함)
	⑦⑦ 제습 공조장치	-외기를 제습하여 냉각시 잠열부하를 줄이고, 배출공기로 제습기를 재생 시키는 것
	⑦⑧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원적외선 방사체와 피가열체가 직접 복사전달되는 방식에 한함(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함)
	⑦⑨ 스프링 쿨 시스템	-지붕표면에 물을 미세하게 분사하여 태양열의 실내전도를 막아 실내 냉방 부하를 줄여주는 장치로서 분사 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 되는 것
	⑧① 에어커튼(Air Curtain)	-공기막 형성으로 내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
	⑧①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고효율인버터, 고효율송풍기(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함),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 특성 댐퍼, 실내온습도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비한 공기조화시스템
	⑧② 전기 축열식 냉난방장치	-열차, 버스, 트럭 등 수송차량에 냉동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상 주냉기와 차상축열조를 활용해 냉난방하는 장치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p>⑧③ 연료유 개질장치</p> <p>⑧④ 추진효율 증진장치 및 재료</p>	<p>-초음파 연료유 개질장치, 중질유 고형물 분쇄장치, 연료유 혼합장치 등 중질유 및 슬러지 입자를 미세화 하여 연소효율을 높이는 장치</p> <p>-선미조과 경감장치, 에너지절약형 추진장치, 추진기효율개선장치, 선체 마찰저항 감소를 위한 특수방오도장 등 추진효율증진에 의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p>
IV.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 사업 (※ 중소기업에 한함)		
	<p>⑧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기자재로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p> <p>⑧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p> <p>⑧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p>	<p>-“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기자재로서 공단 이사장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한함</p> <p>-“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p> <p>-“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p>
V. 수요관리 투자사업 (※ ESCO투자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함)		
	<p>⑧⑧ 최대 수요관리 감시제어장치</p> <p>⑧⑨ 축냉식 냉방기기</p>	<p>-최대수요전력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및 예측하여 목표전력 초과 우려시 경보발생 및 단계별 부하 차단을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어장치에 한함(단, 한국전력공사 인정 승인기기에 한함)</p> <p>-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빙축열 및 수축열)방식의 냉방시설(단, 공기</p>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p>⑩ 가스냉방시설</p> <p>⑪ 흡수식 냉방시설</p>	<p>열원히트펌프 방식은 제외함)</p> <p>※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함</p> <p>- 엔진구동형 냉난방기(GHP), 엔진구동 냉동기를 이용한 냉방시설</p> <p>- 냉온수기,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한 냉방시설</p>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
-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단,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가. 설치공사 위반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2년간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10%를 초과한 때	1년간
나. 추천신청 위반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2년간
	2) 기타 자금사용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간

3. 구제제도

-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 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